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양 권 석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2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 되어 2009년 12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임원 인사제도 개선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의 지방공기업법과의 중복조항 삭제, 불명확한 조례명 및 조문 정비 등을 통하여 공사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임원 인사제도 개선사항 반영 (부칙)

- 「충청북도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조례」 폐지 ⇒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하여 공사에서 운영

나. 지방공기업법과의 중복조항 삭제 및 조례명·조문 정비 등

- 조례명,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제14조

4.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임원 인사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기업법과 현행 조례 조문 중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불명확한 조례명 및 조문 정비 등을 통해 공사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례명칭의 변경

- 조례명을 “충북개발공사 조례”로 변경

○ 임원 인사제도 개선사항 반영

- 「충청북도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조례」 폐지 ⇒ 임원추천 위원회로 확대하여 공사에서 운영(정관으로 규정)

○ 지방공기업법과의 중복조항 삭제

- 법인격 : 지방공기업법 제51조
- 사무소 : 지방공기업법 제52조
- 출자 : 지방공기업법 제53조
- 주주권의 행사 : 지방공기업법 제55조
- 정관 : 지방공기업법 제56조
- 등기 : 지방공기업법 제57조
- 임원의 결격사유 : 지방공기업법 제60조
- 직원의 임면 : 지방공기업법 제63조
- 임·직원의 겸직제한 : 지방공기업법 제61조
- 이사회 : 지방공기업법 제62조

- 대리인의 선임 :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4
- 사업연도 : 지방공기업법 제64조
- 사업계획 및 예산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8조
-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2
- 결산 : 지방공기업법 제66조
- 회계의 원칙 등 :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 손익금의 처리 : 지방공기업법 제67조
- 선수금 : 지방공기업법 제72조
- 재정지원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2
-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3
- 물품관리 :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4
- 보고 및 검사 등 : 지방공기업법 제74조
- 경영평가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8조
- 상법 및 타법령의 준용 : 지방공기업법 제75조
- 권한의 위탁 :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4
- 공무원의 파견·겸임 :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3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지방공기업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충청북도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조례」 폐지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

회로 대신함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조례」를 폐지함.

금번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임원 인사제도의 개선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공기업법과의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조문 정비를 통하여 공사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과의 일치, 불필요한 법령과의 중복조항 삭제, 조문 정비 등을 통하여 공사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어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하겠음.

다만, 현행 조례의 “제20조 이사회에의 참여제한과 제21조의 비밀 누설 및 재산취득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붙임 1.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